

장애인시설종사자의 인권수행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Exploration on Difficulty of Human Rights Process Conducted in Caretaker Worke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cused on the Caretaker Worke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in Busan-

김선주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Sunjoo Kim(sjoo8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권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추상적인 어려움을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명확화하고 개념화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술문 리스트를 수집하고, 인덱스카드(index card)를 분류토록 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군집명이 도출되었고, 종사자들은 시설 내에서는 거주인과의 의사소통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고 종사자의 곁으로 드러나는 단순 행위나 거주인의 주관적인 인권상황인식에 근거한 거주인과 종사자와의 갈등이 종사자의 인권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설 외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요구하는 인권관리 실무와 현장실무 간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 외부 인권조사나 점검에 대한 경직성이나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인권조사와 점검행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수행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 시설종사자 | 지적장애인 | 인권 | 다차원척도법 |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onceptualize difficulty of abstract experiencing human rights process conducted in caretaker worke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by utilizing multidimensional scaling. Focused on the caretaker worke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in Busan, gathering a declarative sentence from caretaker workers, have classified index ca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e reached name of six cluster. In facilities, caretaker workers was recognized Communica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os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tention of service provider is not taken into account, those people emphasis to show up for caretaker workers, conflict based subjective human rights awareness of thos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ternal facilities, interest in human rights is increasing becoming of pollution have difficulty to work hard time gaps between practice of human rights management and on-the-job experience, the rigidity of human rights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caretaker workers.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number of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can be used to reduce difficulty of human rights process conducted in the caretaker worke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 keyword : | Disabled Perso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 Caretaker Workers |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Human Rights | Multidimensional Scaling |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와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제도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권에 취약한 장애인이기 때문인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약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적능력의 활용과 인지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상황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거주인 스스로가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것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폭행(성폭행), 감금, 강제노동, 지역사회교류 단절 등이나 시설운영 면에서 폐쇄적인 시설운영과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재발 등이 자주 언급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신의 집처럼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는 법적인 처벌로까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식주, 신체 및 정신적 안전, 자기결정권, 입·퇴소의 자유, 가족면회 권리, 시간 관리의 자유,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 등과 같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인권문제가 맞닿아 있다[1][2]. 이러한 인권문제들이 현재에도 상당수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실천가의 인권실천딜레마 경험[3]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주를 이룬다[4-14]. 종사자 대상의 연구는 학대와 인권에 관련한 인식·태도연구나 민감성, 인권딜레마 위주로 이루어졌다[15-1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거주인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전반을 공유하기에 사회복지실천 자체가 인권수행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인권수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연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3][18]. 그러나 두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

인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인권실천딜레마를 규명하였지만 특정 한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거나[18], 장애인거주시설 실천가에만 국한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3]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인권수행과정에서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은 인권의 예비침해자나 예비범죄자라는 스티그마를 안은 채 인권수행의 주체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및 보호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인권교육의 문제임을 강조한다[19]. 또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사회적 권리 침해를 교육을 통해 완화시켜야 하고[18] 인권관점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인권활성화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다[20].

따라서 종사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과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종사자들이 인권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안팎에서 종사자의 인권수행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종사자의 인권보장행위가 더욱 자발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능의 종사자들이 근무현장에서 업무과정상 겪게 되는 인권의식과 인권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차원적도법을 활용하여 다소 추상적이던 인권의식과 수행과정상의 어려움을 명확화하고 개념화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인권업무수행에 대한 실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종사자의 인권수행상황을 원활히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과 인권

장애인들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독특한 신념과 욕구·생활양식과 의사소통방식을 지닌 구별된 문화집단으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삶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한다[2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입소를 할 것인지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하고 일상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채 주체적 삶을 살아가야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로 G. Theunissen and W. Plaute는 '아동화·과보호·지속적 통제와 규정·개인 욕구나 관심에 대한 무시나 금지가 두드러진 생활환경'이라고 주장하였다[20].

인간의 존엄성 실현 가치가 중요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행정이나 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해야 하고 장애인과 둘러싼 심리적·환경적 상황을 인권의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거주시설과 인권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접촉이나 사회적 노출이 결여된 상태에서 장애인의 능력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비과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편견과 차별을 숨기려하지 않는다[22].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형성되는 요인으로 보편인간의 지향, 완전인간의 지향, 욕구불만의 전위, 초자아의 결여, 전통복지의 해이를 들고 있다[23].

Ife는 장애인과 거주시설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인권 이슈가 교차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인권과 관련하여 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다

[3]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은 본질적으로 인권의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문제의 출발점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시설에 들어가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한다는 시작부터가 인권침해적 상황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는 일상생활유지 전반에 매우 다양하게 잔존해 있다[3][12]. 신현석[1]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별 사례로서 평등권, 사생활권, 자유권, 사회권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권리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평등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애와 관련된 갈등, 집단생활로 인한 개별적 존중권의 한계, 사생활권에서는 성별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의 미흡, 개인 정보의 노출·공동거주 공간의 프라이버시 환경 부재, 자유권에서는 자유로운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사용, 자유로운 외출의 제한, 자신이 원하는 시간관리에 대한 제한, 사회권으로는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기관의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의 부족, 정보접근 기회의 부족,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기회의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원인을 시설이나 종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권수행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에 지적장애인의 투표권 부여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표권행사의 콘텐츠와 기법 개발을 강조하면서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 지원시스템을 강조[13] 하는 등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주려는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인권

최근 연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인권수행 과정에서 정당방어의 범위, 이용자 폭력의 대처방안 부재, 동료고발에 대한 갈등의 어려움[18]을 보고하였다. 박경수·장혜경[3]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소수의 실천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개인차원, 타인과의 공생차원, 인권을 담보하는 구조적 차원을 도출하여 실천가와 장애인과의 일상관계에서의 인권딜레마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두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인권실천딜레마를 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김경희·김미옥[18]의 연구는 특정 한곳 시설의 한 개의 인권침해사건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박경수·장혜경[3]의 연구는 소수의 실천가와 장애인에게만 국한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종사자가 인권수행과정에서의 장애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경험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전반적 인권보장과 근무실태에 대한 연구[24]가 있었지만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에 머물고 종사자 입장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권교육과 결부된다. 이렇듯 인권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인권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떻게 인권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지, 이들이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18].

Misgeld[10]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상황에 초점을 맞춘 교육보다는 이런 상황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의식 상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성적욕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시설종사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25]. Rest[10]는 한 개인이 인권문제 상황에서 인권 옹호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는 그 상황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수행 상황과 관심정도, 관점에 따라 거주인에 대한 인권서비스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는 인권강화계획을 세우고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강화계획에 발맞추어 현재 각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종사자인권교육과 이용자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부산지역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인권교육, 인권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회의가 실시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에 인권에 대한 경각심, 기대감, 부담감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설치와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적 공급주체의 인권교육 운영지원이 부재하고 어떤 종류의 인권서비스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용자의 욕구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종사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이고 최적의 인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만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 대상 인권수행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종사자 107명을 대상으로 인권수행 어려움과 관련된 서술문을 수집하였다[표 1]. 두 번째는 종사자 277명으로부터 생성된 서술문을 가지고 유사한 개념들끼리 분류하는 작업 및 이를 토대로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컨셉트 맵핑(concept m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컨셉트 맵핑은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들을 구조화시키는 의사결정도구이기도 하면서 연구방법이기도 하다[26].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유사성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결과물을 가지고 통계학적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에 준용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2015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연구자가 직접 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하여 거주시설 방문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전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에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수행을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의 문장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서술문을 그 자리에서 직접 입력하여 빔 프로젝터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 작업은 부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의 인권담당자가 지원해 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총 5개 기관에서 60개의 서술문이 수집되었다[표 2].

표 1. 서술문 수집과정에 참여한 대상기관 및 종사자 현황

연번	기관명	참여(명)	서술문(개)	참여자 현황(명)
1	A 장애인 생활시설	20	10	원장 1/사무국장 1/사회재활교사 1/생활재활교사 16/취사원 1명
2	B 장애인 생활시설	25	12	사무국장 1/사회재활교사 2/생활재활교사 21/간호사 1
3	C 장애인 생활시설	21	5	생활재활교사 20/간호사 1
4	D 장애인 생활시설	19	18	사회재활교사3/생활재활교사 15/간호사 1명
5	E 장애인 생활시설	22	15	사무국장 1/사회재활교사 3/생활재활교사 16/취사원 2
합계		107	60	

그 다음으로, 수집된 서술문 60개를 개별 인덱스 카드(index card)로 출력하여, 연구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60장의 인덱스 카드에 적혀 있는 서술문을 보고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끼리 그룹핑(grouping)하여 277명의 생성한 분류 결과를 근거로 60×60 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한 다음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표 2. 수집된 서술문 리스트

번호	서술문
1	신체가 불편한 거주인이 차량 탑승 시 벨트가 생식기 부위를 압박해도 벨트를 끼워야하는 경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당황스럽다
2	식사지원 시 거주인의 편식하는 욕구와 건강상의 문제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3	거주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4	훈육이 어려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5	인권점검 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6	위생차원의 문제로 두발을 획일화하였는데 이 부분이 인권문제로 다루어지면 문제가 된다
7	이용자의 뻘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인권조사가 나올 때는 수용이 되는 점이 난감하다
8	거주인과 언어소통이 확실하지 않아 어렵다
9	각 시설마다 특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인권의 잣대로 판단한다
10	적절한 상과 적절한 벌의 중간지점을 찾기 어렵다
11	거주인과 종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거주인의 의사와 합치될 때까지 오래 걸린다
12	부모들은 거주인의 말만 믿으니까 거주인이 외출을 나가서 종사자나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민감해진다
13	거주인이 무엇을 요구할 때 그 부분을 다 들어주어야 할지 고민이다
14	인권점검 시 당시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주인의 답변만 듣고 판단한다
15	거주인의 기분과 상황(실태점검 인터뷰)에 따라 답변이 달라 어렵다
16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한다(내가 우리 때문에 월급받고 살잖아 / 너 잘라버릴거야)
17	거주인이 무언가 요구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있어 힘들다
18	물리치료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치료의 효과나 만족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19	인권교육에서 거주인의 요구나 표현만 가르치는 부분이 어렵다(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됨)
20	인권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21	거주인과 대화하기도 어렵고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거주인이 부정적인 부분을 표출시 한계를 느낀다
22	외부의 점검이 나올 시 지적을 받는 부분이 힘들다
23	인권이라는 단어가체가 무겁고 힘들다
24	외부의 점검이 나오면 시설을 휘젓고 가는 느낌이 든다
25	인권교육을 수준별로 하여도 거주인별로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 힘들다
26	거주인이 인권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어렵게 한다
27	식단에 이용자가 좋아하는 식단이 꼭 있어야 한다
28	인권상황조사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반영하여 섭취하고 있는지 질문하는데 이용자는 좋아하는 음식이 매일 안나오면 '반영 안한다'고 답변한다
29	아동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조사 문항이라서 어렵다(스스로 옷을 고를 수 없는 아동일 경우)
30	생활일지 작성 시 사실 그대로 작성하지 못한다(인권점검 시 문제 상황 발생우려)
31	인권실천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문서화하는 작성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32	지침 상의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현장에서 행해지는 변수가 너무 많다
33	지적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교육자료부족)
34	이용자가 종사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용자가 종사자를 이용한다
35	물리치료 시 이용자는 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프다고 하지만 치료를 해야 할 경우 어렵다
36	장애인 친구입장과 종사자 입장에서 정상이라는 기준이 어렵다
37	아토피가 심한 이용자가 밀가루 음식을 먹었다고 할 때 주는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다
38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 말만 그대로 듣고 판단하니가 힘들다
39	아단을 치게되면 9개 잘한 것보다 1개 못한게 문제가 된다
40	구청, 인권위원회에서 상황조사 나왔을 때 더 까다롭다
41	인권실태조사할 때 매달 똑같은 질문을 하는게 시간낭비같다
42	매달 외부에서의 인권실태조사가 예산낭비같다는 생각이 든다

43	대답을 똑바로 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중에 늘 대답을 할 수 있는 특정친구가 조사시에 답을 하게 된다
44	시설유형에 맞게끔 인권상황조사문항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45	관할 담당구청 직원도 인권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46	종사자도 거주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외부인권지킴이단이 거주인과의 의사소통이 명확했는지 불분명하다
47	인권점검 시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데 종사자 및 시설에 확인절차 없이 상부(시군구 보고)에 보고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
48	'예' '아니오'도 대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이용자도 많다
49	점검 시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검자가 조사를 하는 부분이 힘들다
50	종사자를 잘 따르고 좋아하지만 인권점검 시에는 맞았다고 답변을 하여 힘들다
51	인권관련 기록물(개별일지)이 없을 시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일지기록을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52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조사 점검자가 시설에서 일주일 합숙을 했으면 좋겠다
53	이용자와 종사자의 성별을 동일하게 배치하다보면 남자이용자에게 얼마역할의 서비스(정서적 서비스 포함)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54	치료과정 시 혼란하게 마무리 되었는데 이용자가 '화났다' '아프다' 고 보고해서 당황스럽다
55	인권업무에 서류작업이 너무 많다
56	주양육자가 종사자인지 가끔 보는 부모인지 모르겠다
57	시설에서의 훈육이 비장애인에게 비해서 잦아들 너무 엄격하다
58	인권이 강조되면서 모든 서비스가 인권평가 위주로 진행되어 서비스가 부자연스럽다
59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시설에 문제발생시 모든 장애인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힘들다
60	한명의 인권을 대변해야 하는지 집단의 인권을 대변해야 하는지 어렵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수행의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권수행의 어려움은 종사자 개別に 따라 달리 인식되고,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을 어떤 기준을 근거로 개념화하고 해석해야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차원척도법이 적절하다. 다차원척도법은 대상 간의 유사성을 근거로 다차원 공간 내의 점으로 위치를 정하고 그 점간의 거리가 유사성에 일치되도록 점의 좌표를 결정해 주는 방법을 취한다. 이를 위해서 최소사승척도 분석법(ALSCAL : Alternating Least Square Scaling)을 활용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수행에 따른 어려움의 인식은 다음 공식에 준한다. 여기에서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수행 시 겪는 어려움으로 제시한 서술

문들이 이를 i 와 j 라고 하고 근접성을 δ_{ij} 로 표기한다.

$$\delta_{ij} \rightarrow \delta^{*ij} = b + c \cdot \delta_{ij}$$

IV. 분석결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총 277명 중 남자는 28.3%, 여자는 71.5%이며, 평균 연령은 36.45세, 종교는 무교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급은 생활재활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사회재활교사, 취사원, 국장, 원장, 영양사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2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2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19.8%로 나타났고, 반면 경험이 없는 종사자는 80.2%로 나타났다.

표 3. 참여 종사자의 현황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직급	
남자	78(28.3)	원장	4(1.4)
여자	198(71.5)	국장	5(1.8)
학력		사회재활교사	18(6.5)
고졸이하	25(9.0)	생활재활교사	203(73.6)
대졸	243(87.7)	영양사	3(1.1)
대학원 석사졸	9(3.2)	취사원	8(2.9)
종교		기타	35(12.7)
기독교	55(20.2)	근무기간	
천주교	22(9.9)	1년미만	39(14.1)
불교	65(23.9)	1년이상-3년미만	39(14.1)
없다	116(42.6)	3년이상-5년미만	57(20.7)
기타	9(3.3)	5년이상-10년미만	47(17.0)
연령	평균 36.45 표준편차 9.33	10년이상-20년미만	66(23.9)
		20년이상	9(3.3)
		인권업무담당유무	
		있다	54(19.8)
없다	219(80.2)		

2. 종사자 인권수행 어려움 인식분석

종사자의 인권수행의 어려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60개의 서술문을 쌍으로 선택하여 60×60개의 쌍대비교 (Paired Comparison)를 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서술문을 동일 그룹에 포함시킨 수이며, 숫자가 참여자 수에 가까울수록 참여자들이 그 서술문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다차원적도 분석을 하게 되면 유사성에 근거하여 각 서술문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은 전체 수준에서 서술문 간의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각 좌표들의 거리 값으로 서술문 간의 유사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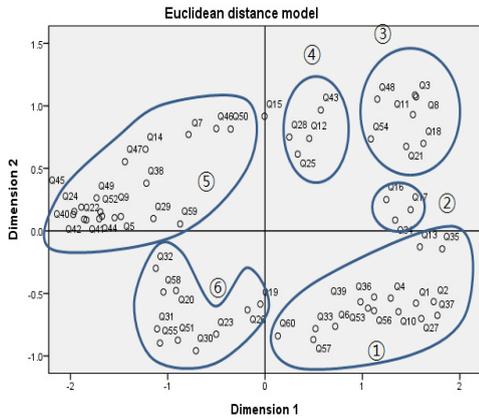


그림 1. 서술문에 대한 점지도(point map)

[그림 1]은 각 서술문의 좌표를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개별 서술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략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즉,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77명이 60개의 인권수행 어려움을 대략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6개의 그룹에 따라 분류된 개별 서술문의 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이들 군집에 대한 결과의 통계적 적합성은 s-stress값과 R2의 값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s-stress값은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s-stress는 0.02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높은 편이며, R2는 0.94여서 모형의 설명력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서술문에 대한 군집 현황

번호	서술문
군집 1 : 종사자의 인권실천의 딜레마	
1	신체가 불편한 거주인이 차량 탑승 시 벨트가 생식기 부위를 압박해도 벨트를 끼워야하는 경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당황스럽다
2	식사지원 시 거주인의 편식하는 욕구와 건강상의 문제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4	훈육이 어려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6	위생차원의 문제로 두발을 확실화하였는데 이 부분이 인권문제다 다루어지면 문제가 된다
10	적절한 상과 적절한 벌의 중간지점을 찾기 어렵다
13	거주인이 무엇을 요구할 때 그 부분을 다 들어주어야 할지 고민이다
27	식단에 이용자가 좋아하는 식단이 꼭 있어야 한다
33	지적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교육자료 부족)
35	물리치료 시 이용자는 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프다고 하지만 치료를 해야 할 경우 어렵다
36	장애인 친구입장과 종사자 입장에서 정상이라는 기준이 어렵다
37	아토피가 심한 이용자가 밀가루 음식을 먹겠다고 할 때 주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39	야단을 치게 되면 9개 잘한 것보다 1개 못한게 문제가 된다
53	이용자와 종사자의 성별을 동일하게 배치하다보면 남자이용자에게 엄마역할의 서비스(정서적 서비스 포함)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56	주양육자가 종사자인지 가끔 보는 부모인지 모르겠다
57	시설에서의 훈육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잦대가 너무 엄격하다
60	한명의 인권을 대변해야 하는지 집단의 인권을 대변해야하는지 어렵다
군집 2 : 거주인의 왜곡된 인권 나눔	
16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한다(나기 우리 때문에 월급받고 살잖아 / 너 잘라 버릴거야)
17	거주인이 무언가 요구하면 다 되는데 다 되지는 알고 있어 힘들다
34	이용자가 종사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용자가 종사자를 이용한다
군집 3 : 거주인과 종사자 간의 의사소통 어려움	
3	거주인과 의사소통이 어렵다
8	거주인과 언어소통이 확실하지 않아 어렵다
11	거주인과 종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거주인의 의사와 합치될 때까지 오래 걸린다
18	물리치료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치료의 효과나 만족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21	거주인과 대화하기도 어렵고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거주인이 부정적인 부분을 표출시 한계를 느낀다
48	'예' '아니오' 도 대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이용자도 많다
54	치료과정 시 혼 혼하게 마무리 되었는데 이용자가 '화났다' '아프다' 고 보고해서 당황스럽다
군집 4 : 사실과 다른 거주인의 주관적 인식	
12	부모들은 거주인의 말만 믿으니 거주인이 외출을 나가서 종사자나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민감해진다
25	인권교육을 수준별로 하여도 거주인 별로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 힘들다
28	인권상황조사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반영하여 섭취하고 있는지 질문하는데 이용자는 좋아하는 음식이 매일 안 나오면 '반영 안한다' 고 답변한다
43	대답을 똑바로 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중에 늘 대답을 할 수 있는 특정친구가 조사 시에 답을 하게 된다
군집 5 : 외부 인권조사 및 점검상의 문제	
5	인권점검 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7	이용자의 뻘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인권조사가 나올 때는 수용이 되는 점이 난감하다
9	각 시설마다 특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인권의 잣대로 판단한다
14	인권점검 시 당시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주인의 답변만 듣고 판단한다

22	외부의 점검이 나올 시 지적을 받는 부분이 힘들다
24	외부의 점검이 나오면 시설을 휘젓고 가는 느낌이 든다
29	아동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조사 문항이라서 어렵다(스스로 웃을 고를 수 없는 아동일 경우)
38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 말만 그대로 듣고 판단하니까 힘들다
40	구청, 인권위원회에서 상황조사 나왔을 때 더 까다롭다
41	인권실태조사할 때 매달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시간낭비 같다
42	매달 외부에서의 인권실태조사가 예산낭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
44	시설유형에 맞게끔 인권상황조사문항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45	관할 담당구청 직원도 인권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46	종사자도 거주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외부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인과의 의사소통이 명확했는지 불분명하다
47	인권점검 시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데 종사자 및 시설에 확인 절차 없이 상부(시군구 보고)에 보고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
49	점검 시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검자가 조사를 하는 부분이 힘들다
50	종사자를 잘 따르고 좋아하지만 인권점검 시에는 맞았다고 답변을 하여 힘들다
52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조사 점검자가 시설에서 일주일 합숙을 했으면 좋겠다
59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시설에 문제발생시 모든 장애인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힘들다
군집 6 :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행되는 인권관리실무에서의 어려움	
19	인권교육에서 거주인의 요구나 표현한 가르치는 부분이 어렵다(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됨)
20	인권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23	인권이라는 단어자체가 무겁고 힘들다
26	거주인이 인권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어렵게 한다
30	생활일지 작성 시 사실 그대로 작성하지 못한다(인권점검 시 문제 상황 발생우려)
31	인권실천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문서화하는 작성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32	지침 상의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현장에서 행해지는 변수가 너무 많다
51	인권관련 기록물(개별일지)이 없을 시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일지기재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55	인권업무에 서류작업이 너무 많다
58	인권이 강조되면서 모든 서비스가 인권평가 위주로 진행되어 서비스가 부자연스럽다

[그림 1]을 보면, 차원 1과 차원 2에 따라서 서술문들이 위치해 있다. 서술문의 좌표와 함께 군집해 있는 서술문들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먼저 차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차원 1은 ‘인권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 외부와의 관계’와 ‘인권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 내부의 종사자와 거주인 간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차원 2는 ‘종사자의 어려움’과 ‘외부 혹은 거주인의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술문 좌표값을 근거로 군집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군집명을 붙였다. 차원 1에 따라서는 군집 5 ‘외부 인권조사 및 점검상의 문제’와 군집 6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행되는 인권관리실무에서의 어려움’이 점지도(point map) 왼쪽에 위치하며, 군집 1 ‘종사자의 인권실천의 딜레마’, 군집 2 ‘거주인의

왜곡된 인권 남용’, 군집 3 ‘거주인과 종사자 간의 의사소통 어려움’, 군집 4 ‘사실과 다른 거주인의 주관적 인식’이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차원 2에 따라서는 아래쪽에 군집 1과 군집 6이 위치하며, 위쪽에는 군집 2, 군집 3, 군집 4 그리고 군집 5가 위치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거주인의 인권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시설 내에서는 거주인과의 의사소통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고 종사자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단순 행위나 거주인의 주관적인 인권상황인식에 근거한 거주인과 종사자와의 갈등이 종사자의 인권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설 외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요구하는 인권 관리 실무와 현장 실무 간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 외부 인권조사나 점검에 대한 경직성이나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인권조사와 점검진행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고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술문에 근거한 군집은 총 6개이며 각각의 군집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종사자의 인권실천의 딜레마, 군집 2는 거주인의 왜곡된 인권남용, 군집 3은 거주인과 종사자 간의 의사소통 어려움, 군집 4는 사실과 다른 거주인의 주관적 인식, 군집 5는 외부 인권조사 및 점검상의 문제, 군집 6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행되는 인권 관리 실무에서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도출된 최종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종사자들은 시설 내에서는 거주인과의 의사소통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고 종사자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단순 행위나 거주인의 주관적인 인권상황인식에 근거한 거주인과 종사자와의 갈등이 종사자의 인권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설종사자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데, 행동으로 말을 대신하는 의사표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과, 그냥 넘겨도 되는 말의 구분 모호, 답답한 의사소통과 당황스러운 의사소통, 지적장애인 그들만이 아는 언어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들은 지적장애인과의 친밀도가 높고 오래 지속될수록 의사소통의 원활함의 정도가 높아진다[28]. 본 연구에서 종사자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는데 실제 실천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거주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들의 메시지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경험적 유추가 다소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자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인권수행과정의 어려움으로 거주인과의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즉 거주인 대상으로 하는 인권관련서비스와 점검은 강화되는데 의사소통을 명확히 해줄 공식화된 의사소통도구도 없고 거주인과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도 부재한 현실인 것이다. 본 연구의 서술문 군집 5에서 인권조사 점검자가 시설에 1주일간 숙박하면서 장애인과 지내보고 인권상황을 평가했다면 좋겠다는 종사자의 주장은 종사자의 거주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종사자들은 시설 외부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요구하는 인권관리 실무와 현장실무 간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 외부 인권조사나 점검에 대한 경직성이나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인권조사와 점검진행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종사자들이 서술문에서 인권업무에 서류작업이 많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모든 서비스가 인권평가위주로 진행되어 서비스가 부자연스럽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거주인에게 현장점검을 하고는 시설에 확인절차 없이 시군구에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종사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을 해도 훈육차원에서 어디까지 지도가 들어가야 인권문제가 야기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거주인의 일상생활수행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수행과 관련하여 공적 공급주체자가 그들의 역할은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시설운영자나 종사자의 인권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시설생활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다[9]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인권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연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의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7,500만원을 지원받아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방문교육, 인권교육전문강사 양성,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지원비도 순수 인건비와 사업비이고 기타 관리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의 인권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내용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인권교육이 주로 거주인의 인권침해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종사자들의 인권수행경험의 직·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감수성과 자기성찰을 도모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정에서 인권수행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은 인권수행과정에서 장애인들로부터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소연할 길이 없고, 이러한 상황 발생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혼자서 참고 가는 상황이 많았다.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인권 상황점검 시에도 상대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고 종사자의 인권수행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필요로 했다. 본 연구의 종사자들이 2015년 종사자방문인권교육의 설문평가(미발간)에서 법이나 제도, 규정 등에 대한 교육 보다는 종사자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적 태도를 인식하는 교육내용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주인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인권 친화적 서비스가 강조되면 될수록 거주인과의 내밀한 의사소통의 중

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주인의 의사소통기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데가 유아교육현장의 교재교구이다. 반드시 언어적 의사소통만을 고수하기보다 언어영역 교재교구(피즐, 매칭하기 게임교구,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교구 등)를 개발하거나 실물이나 모형, 그림 자료, 사진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관할 시교육청에서는 교원들 대상으로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29]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유아교육현장의 현장선생님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문의하고, 현장선생님들로 학습자료 개발팀을 구성하여 자료개발을 하는데 연구비를 포함한 예산을 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교재교구나 자료집은 각 유아교육현장에 무료 배포되어 교원들이 상시 활용토록 하여 업무 부담의 경감을 꾀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으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차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인권자료개발팀(가칭)을 구성하여 현장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자료집과 교재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행정기관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천강화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전환과 예산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본은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가 79.2% 이루어지고 있고 종사자들이 인권관련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언이나 폭행,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종사자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23].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인권적 상황은 반드시 종사자 개인의 책임도, 시설의 책임도 그렇다고 행정기관의 책임만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 시설장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온정주의적 태도에서 탈피하고 종사자들이 시설의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불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은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0]에서 인권지킴이단 운영관련 예산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게 하고, 인권지킴이단 담당 직원의 업무조정을 지지하기만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지침을 개선해야 한

다. 행정기관은 인권 담당직원에 대한 시설장 재량의 휴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시설장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은 인권서비스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시설과 시설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할 시군구는 관리·감독만 행하겠다는 지배구조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권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접근은 복지적 접근보다 인권적 접근이 우선되는 적극적인 인권중심의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수행어려움에 대한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종사자의 인권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업무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딜레마와 부담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시점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수행 어려움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들을 다차원적도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념화·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대책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신현석,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형에 따른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pp.401-402, 2012.
- [2] 임성택,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제128권, pp.7-59, 2012.
- [3] 박경수, 장혜경, “장애인 거주시설 실천가의 인권딜레마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제22권, pp.249-272, 2013.
- [4] 백종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실태,” 국회인권포럼, pp.7-21, 1998.
- [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실태조사: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보고서, 2005.
- [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2017)*, 도서출판 한학문화, 2012.
- [7] 이원출,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8] 정선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3권, pp.59-87, 2006.
- [9] 고명식,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0] 정선영, 손덕순, 백형의, “부랑인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8권, pp.67-95, 2008.
- [11] 유동철,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상황과 복지*, 제31권, pp.53-65, 2011.
- [12] 임성택,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제128권, pp.7-59, 2012.
- [13] 김진우, “지적장애인 투표권 부여 및 행사 관련 쟁점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pp.345-367, 2015.
- [14]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제8권, 제8호, pp.158-175, 2008.
- [15] 김지경,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4권, pp.1-12, 2002.
- [16] 박승탁, “시설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장애인생활시설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목회*, 제29권, pp.383-409, 2008.
- [17] 김현진,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4권, pp.110-130, 2010.
- [18] 김경희, 김미옥,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9권, pp.235-252, 2012.
- [19] 이관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0] 양옥경, “사회복지학 연구의 책임성과 윤리,” *한국 사회복지질적연구*, 제1권, 제1호, pp.7-33, 2007.
- [21] 신호진, 손신, “장애인, 진정한 자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강점마라보기와 역량강화,” *장신논단*, 제41권, pp.417-438, 2011.
- [22] 이선우,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9.
- [23] 이규태,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 장애자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국회보*, 제181권, pp.176-182, 1981.
- [24] 변경희,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25] 황소진, *정신지체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6] M. Kane and W. M. K. Trochim, *Concept mapping for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2007.
- [27] 허명희, *SPSS Statistics 척도화 분석*, spss출판, 2009.
- [28] 김민영, 김진우,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와 시설종사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5권, 제2호, pp.5-34, 2011.
- [29] <https://real.child.pen.go.kr/sub.php?MenuID=29>
- [30]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2015.

저 자 소 개

김 선 주(Sun-Joo Kim)

정희원



- 2000년 8월 ~ 2012년 2월 : 아미정신건강센터 원장
- 2009년 2월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관심분야> : 정신보건, 사례관리, 상담기법